

김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2971호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년월일 2022. 3. .
제출자 감사담당관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(2022.1.13.)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 변경 및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근거법령 조문 변경 (안 제1조, 안 제2조)

: 지방자치법 제16조 →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나. 관계법령 · 현행 자치법규 : 붙임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라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 : 생략(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)

2) 부서협의결과 : 해당없음

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
가) 중앙부처 :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

나) 경 기도 : 감사총괄담당관

김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김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”를 “제21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5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법 제1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관 실·과·소 | | 감사담당관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 안 자 | 실·과·소장 성명 | 감사담당관 박만준 |
| | 팀장 직위·성명 | 감사팀장 김문숙 |
| | 담당자 성명·전화 | 지방행정주사보 현주영(☎2076) |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(감사청구 주민수)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0명 이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 (목적) ----- --- 제21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5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 (감사청구 주민수)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----- ----- -----.</p> |